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39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국가정원의 범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 추가 및 지자체장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3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명확화 ..	8
3. 국립정원소재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정원도시 육성 근거 마련 ·	10
4.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14
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	18
6. 산림청장의 권한위임 범위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	2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6. 3. 17.

다.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해외에서 조성한 한국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정원의 범위,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이 변화된 정책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내용

- 가. 국가정원의 범위에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의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18조의3).
- 나.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7).
- 다.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정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정원도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
- 라.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목적·규모·관리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 마.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를 추가함(안 제18조의15).
- 바. 정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의 장까지 권한위임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

IV. 검토의견

1. 국가정원의 범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 추가 및 지자체장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정원의 범위에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정원의 운영과 지방정원 등의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며, 예산 지원의 대상에 생활정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3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생략)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 -----.
1. 국가정원: 국가가 <u>조성·운영하는</u> 정원	1. ----- <u>조성·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② -----<u>지방정원</u>-----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u>지방정원·공동체정원 및 생활정원</u>----- -----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 지방정원 등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국가정원(2개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원명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연간운영비	비고
순천만 국가정원	전남 순천시	2015.9.5	92.7ha	34,000 (국비 4,000, 지방비 30,000)	국가정원으로 지정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중구	2019.7.12	83.5ha	4,410 (국비 2,100, 지방비 2,310)	국가정원으로 지정

주) 2개소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영 중임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정원(16개소) 현황]

연번	정원명	소재지	등록일자	지정면적	조성비 (지방비)	연간운영비 (지방비)
1	세미원	경기 양평군	2019.06.28	12.7ha	11,200	700
2	죽녹원	전남 담양군	2022.10.13.	19.5ha	6,330	2,000
3	거창창포원	경남 거창군	2024.01.24.	42.4ha	15,319	5,557
4	영월 동·서강정원	강원 영월군	2021.06.16	10.4ha	3,900	100
5	구절초정원	전북 정읍시	2022.07.18	38ha	4,900	2,273
6	경북천년숲정원	경북 경주시	2023.04.17	33ha	10,800	1,508
7	화개지방정원	인천 강화군	2023.04.24	11ha	13,000	4,264
8	부산 낙동강 정원	부산 사상구	2023.08.01	250ha	-	100
9	줄포만 노을빛정원	전북 부안군(줄포면)	2023.10.31	31ha	6,700	1,065
10	해뜰마루정원	전북 부안군(부안읍)	2023.11.13	34ha	5,420	483
11	지리산정원	전남 구례군	2024.10.10	10.89ha	9,000	500
12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 북구	2024.10.30	14.09ha	6,700	532
13	신정호 정원	충남 아산시	2025.01.10	23.86ha	25,500	4,249
14	좌광천 지방정원	부산 기장군	2025.04.30	12.2ha	-	3,449
15	세천늪테마정원	대구 달성군	2025.07.03	12.4ha	6,040	369
16	자라섬 정원	경기 가평군	2025.10.15	55.9ha	16,500	6,000

주) 조성비의 경우, 영월 동·서강정원, 구절초정원, 경북천년숲정원, 해뜰마루정원은 지방비 외 일부 국비 지원되었으며, 부산 낙동강 정원 및 좌광천 지방정원은 생태공원으로 기조성된 곳을 정원으로 등록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외에도 지방정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원의 범위가 조문 간 상이하게 규정됨에 따라 법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재정 지원이 국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원의 구분(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 뿐만 아니라 생활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의 주체이며,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50 : 50)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예산 지원 대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생활정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	국비	개소	국비	개소	국비	개소	국비	개소	국비
지방자치단체 조성·관리 생활정원(보조사업 50%)	22	9,000	69	21,737	75	19,400	88	22,229	88	20,680

주) 국유지 내 조성(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비 100%)되고, 국가 등이 관리하는 생활정원 제외

※ 자료: 산림청

-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정원 운영과 지방정원 등의 조성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제4항은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예산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이나 지방정원 및 생활정원 조성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³⁾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⁴⁾되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음.

산림청은 개정안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임.

3) 공동체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 공동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므로 지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통령령 제30250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254호, 260호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명확화

개정안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u>국가</u> 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u>산림청장</u> 은----- ----- ----- -.
② <u>국가</u> 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u>산림청장</u> 은----- ----- -----.
③ <u>국가</u> 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u>산림청장</u> 은-----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 수행기관 및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정원 평가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국립정원소재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정원도시 육성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립정원소재센터와 국립정원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정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제18조의9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u>진흥사업의</u>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의</u> ----- <u>필요한 경우</u>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u>설치·운영하거나</u> ----- ----- 1. <u>국립정원소재센터: 정원소재 개발·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지원</u> 2. <u>국립정원문화원: 정원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원</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정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이하 “정원도시”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현행법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정원소재센터(2026년 9월 개원예정), 국립정원문화원(2025년 9월 18일 개원), 정원도시(2025년부터 사업추진 중)는 현재 조성·운영 중에 있으나, 법률상 설치·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예산·조직·운영 등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국립정원소재센터 및 국립정원문화원 조성 현황]

구분	목적	개원	소재지(면적)	조직	사업비
국립정원소재센터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1·2차산업에 특화된 정원소재 발굴	2026.9. (개원예정)	강원 춘천시 (2.5ha)	4실 (58명)	215억원 (국비166억원, 지방비48.5억원)
국립정원문화원	정원문화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한국정원 세계화 추진	2025.9.18.	전남 담양군 (7ha)	4실 (20명)	196억원 (국비136억원, 지방비60억원)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원도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원 인프라 기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총사업비 : 5,000~40,000백만원/개소(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내용 : 정원인프라 확충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커뮤니티 육성 및 참여(마을, 자투리) 정원 등 정원도시 콘텐츠 지원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연차별 소요액 기준사업비(안)>

구 분	사업비 (백만원)	1년차 (계획)	2년차 (설계)	3년차 (시공)	4년차 (시공)	5년차 (시공)
시·군 단위(5년)	40,000	620	1,180	15,000	15,000	8,200
시·군 일부(5년)	10,000	180	320	3,500	3,500	2,500
특·광역시 자치구(3년)	5,000	230	2,500	2,270	-	-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국립정원소재센터 및 국립정원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원도시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산업·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를 통해 정원진흥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이미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⁵⁾

이에 따라 국립정원소재센터, 국립정원문화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률상 설치·운영 근거를 추가로 둘 필요성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정원진흥사업의 전문성·체계성 확보를 위해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을 명확히 하고, 정원도시 육성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4.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리고 정기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관리실태 점검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생략)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외 국가와의 교류 및 우호증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조성목적과 정원규모,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③ 산림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에 조성된 정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에게 한국정원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가 간 우호증진을 위해 해외에 조성하고 있는 한국정원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우며,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한국정원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임.⁶⁾

[해외 한국정원 현황(2024년 기준 : 22개국 43개소)]

구분	유럽(8)				미주(11)					아시아(24)												
국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일본	중국	몽골	튀르키예	사우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계 (43)	4	2	1	1	7	1	1	1	1	5	5	3	2	1	1	1	1	1	1	1	1	1
산림청 (5)	-	-	-	-	1	-	-	1	-	-	-	-	1	-	-	-	-	-	-	-	1	1
정부/ 지자체 (26)	3	2	-	-	2	1	1	-	1	4	4	2	1	-	1	1	1	1	-	1	-	-
민간단체 (12)	1	-	1	1	4	-	-	-	-	1	1	1	-	1	-	-	-	-	1	-	-	-

주) ('15년) 20개국 39개소 → ('17) 21개국 41개소 → ('24) 22개국 43개소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정원의 해외 조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기 점검 및 보수 권고를 통해 해외 한국정원의 품질을 유지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해외에 조성하는 한국정원은 한국 전통조경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한국정원은 한국전통조경공간에 해당하므로,

6) “韓·獨 우정의 상징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훼손 방지”(글로벌이코노믹, 2023년 7월 24일);
“‘K-가든 세계화’ 외치는 산림청, 해외 한국정원 실태도 몰라”(뉴시스, 2023년 10월 16일)

해외에 한국전통조경공간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여 개정안(신설) 삭제를 요청함.⁷⁾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해외에 조성되는 한국정원은 전통적인 기법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정원 디자인, 수목·식재 기술, 조경 산업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으로 한국정원을 한국전통조경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생각되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호에 따라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관리는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이므로, 한국전통조경공간으로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알리도록 하여 한국정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은 체계적인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관리라는 입법 취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

개정안은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정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5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u>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u>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정원산업에</u>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3. <u>정원산업 및 정원문화</u> -----
4. 그 밖에 정원산업 <u>진흥</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u>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정원지원센터는 순천만 국가정원 및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개소 모두 설립·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는 설치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정원지원센터 현황]

구분	시행·운영 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순천만 국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15 ~ '17(3년)	70억원(국비35, 지방비35)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21 ~ '24(4년)	100억원(국비50, 지방비50)

※ 자료: 산림청

그러나 현행법상 설치·운영의 주체가 산림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원교육, 체험 등 정원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정원지원센터 운영 정원문화 프로그램(2026년)]

구분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행사	○ 가든명, 가든피크닉 : 정원 치유 * 3~4월, 꿀잠콘서트, 유화드라잉쇼, 뮤비명 등 ○ 정원 캔들라이트 : 야간공연 * 5~6월, 고품격 클래식 공연, 발라드 공연 ○ 가든 북페어 : 독립출판 어워드 + 북페어 결합 * 9월, 시상식, 북셀링, 독자와의 만남 등 ○ 산타가든 : 겨울철 비성수기 프로그램 * 12월, 대형트리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 국가정원 대표 봄꽃·가을축제 * (봄꽃)'26.5.15.~5.17, (가을)'26.10.30.~11.1. ○ 2026 울산미래정원 페스티벌 개최 * '26.10월(예정) / 미디어아트, 2028울산국제 정원박람회 홍보, 체험 등

치유· 체험	○ 마인드가드닝 프로그램(3~12월) : 20시간(월1회, 2시간), (대상) 경도우울장애 청소년 * 경도 우울장애 환자 등의 정신건강 증진 실내 가드닝 프로그램 ○ 정원처방 프로그램(4~12월) : 10시간(월1회, 1시간), (대상) 발달장애 시민 * 실내·외 정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 정원 상담소(연2회) :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생활형 정원 컨설팅 ○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연2회) : 일반인이 참가하는 정원 만들기 체험 ○ 나는야, 꼬마정원사(연2회) :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국가정원 해설&놀이 ○ 행복한 정원사(연2회) : 국가정원 해설을 곁들인 정원소품 만들기
교육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3~6월) : 36시간(주 1회, 3시간), 30명 ○ 정원관리사 교육(3~7월) : 36시간(주 1회, 3시간), 20명 ○ RHS Level 2 (25년 9월~ 26년 6월) : 120시간 (주 1회, 4시간), 25명 ○ 꼬마정원사 양성교육(3월~6월) : 10주, (1시간), 349명 ○ 미래정원사 양성교육(3월~11월) : 1,400여명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3~6월) : 27강, 20명 ○ 정원아카데미(5월) : 3회, 90명 ○ 어린이 정원 체험교실(7~8월) : 6회, 90가정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원지원센터에서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은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에서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제2항 각 호에 정원소재 개발·육성 등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정원소재센터와 정원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한 국립정원문화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정원지원센터에 정원문화 업무를 추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대한 각 기관 간 역할과 업무의 분담이 조문 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현장과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산림청장의 권한위임 범위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u>국립수목원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소속기관의 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림청장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 대상이 국립수목원장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별 현장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다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현장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권한 위임 대상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⁸⁾

문 의 처
02)6788-5423

8)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